무역상무연구
제76권
2017. 12, pp. 77~101.

논문접수일 2017. 11. 28.
심사완료일 2017. 12. 14.
게재확정일 2017. 12. 15.

신용장 매입은행의 법적지위*

허 해 관**

Ⅰ. 서 언
Ⅱ. 매입신용장, 매입은행 및 매입의 개념
Ⅲ. 매입은행과 수익자 사이의 관계
Ⅳ. 매입은행과 개설은행 사이의 관계
Ⅴ. 결 언

주제어 : 신용장 매입, 매입은행, 매입신용장, 매입의무, 상환청구권

Ⅰ. 서 언

국제거래상 대금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신용장의 수익자로서 국제물품매매의 매도인은 그 신용장을 통하여 가급적 조속히 자금운용의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특정한 은행에 의한 매입이 허용되는 신용장, 즉매입신용장을 원하게 된다.[1] 국내 은행업계에 종사하는 신용장전문

* 본고는 진산 김문환선생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가 편찬한『진산 김문환선생정년기념논문집 제1권 국제관계법의 새로운 지평』법문사, 2011에 실린 본인의 "신용장거래상 지정은행의 법적 지위"라는 논문에 기초하여 특히 매입은행의 법적지위 부분을 보완·발전시킨 것으로 2016년 6월 국제거래법학회와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신용장 매입은행의 법적지위"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것을 거듭 보완·발전시킨 것임을 밝혀둔다.

**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조교수, E-Mail : hkhur@korea.com

1) John F. Dolan, "Negotiation Letters of Credit", 119 *Banking L.J.,* 409, 2002, pp. 413~414.

가로부터 듣는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취급되는 신용장의 대략 70 내지 80%가 매입신용장이라고 한다. 매입신용장에서는 개설은행으로부터 매입을 수권 받는 은행(매입은행)이 지정되는데, 이러한 매입은행은 대개 수익자 국가에 소재한다. 수익자로서는 신용장서류를 외국에서 제시하여야 한다면 서류의 송달위험(transit risk)도 크고, 그 소요시간 때문에 최초 제시시나 재제시시에 신용장 유효기간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신용장에 관하여는 종래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이 있어 범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무역업계와 은행업계에서도 사실상 모든 신용장이 UCP에 준거하여 이용되고 있다. ICC는 지난 2007년 ICC 간행물 제600호로써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을 공표하여 2007. 7. 1.부터 시행하였는바, 이를 "UCP 600"(본고에서는 이를 편의상 'UCP600'이라 표기한다)이라 한다.

매입신용장하에서 매도인인 수익자는 매입은행에서 신용장 매입을 통하여 매매대금을 회수하고, 매입은행은 그 서류를 다시 개설은행에 제시하여 그 신용장대금을 상환받는바, 본고에서는 UCP600에 기초하여 과연 신용장거래에서 매입이란 무엇인지, 그러한 매입의 구조하에서 수익자와 매입은행의 법적 관계와 매입은행과 개설은행의 법적 관계는 각각 어떠한지를 고찰하며, 그에 관한 우리 판례의 견해는 어떠한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하에서는 먼저 매입신용장과 매입은행, 매입의 개념을 정립한 후(Ⅱ), 수익자와 매입은행의 관계(Ⅲ) 및 매입은행과 개설은행과의 관계(Ⅳ)를 고찰한다(Ⅴ).

Ⅱ. 매입신용장, 매입은행 및 매입의 개념

1. 매입신용장

UCP600은 매입신용장을 정의하지 않으나, 관련규정들을 종합해볼 때, 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은 수익자로 하여금 개설은행 이외의 은행에서 매입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신용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UCP600 제6조에 따라 개설은행은 신용장이 (i) 어느 은행에서 이용가능한지(이용장소)(제a항)와 (ii)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에 의하여 이용가능한지(이

용방법)를 명시하여야 하는바,[2] 만약 당해 신용장에서 매입에 의하여 이용가능하도록 명시한다면, 그 신용장은 매입신용장이 된다.

실무상 신용장이 SWIFT로 개설·통지되는 경우에, 신용장의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은 MT700의 "Field 41a (Available With ... By ...)" 난에 명시되는바, "With ..." 부분에 지정은행이 기재되고, "By ..." 부분에 이용방법이 기재된다. 이때 후자 부분에 "By Negotiation"이라고 명시되면 이 신용장은 매입신용장이 된다. 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매입은행이 반드시 지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위의 "Available With ..." 난에는 단수 또는 복수의 은행의 상호(지점 표시 포함)가 기재될 수도 있고, 단순히 "Any bank"라고 기재될 수도 있다.[3] 전자를 제한매입신용장(restricted negotiation credit)이라 하고, 후자를 자유매입신용장(freely negotiable credit) 혹은 일반매입신용장(general negotiation credit)이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모든 은행이 지정매입은행이 된다.[4] 다만 예컨대 "Available with any bank in Korea" 혹은 "Available with any bank in Seoul"와 같이 일정한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은행을 매입은행으로 지정하는 "한역적(限域的) 자유매입신용장"도 얼마든지 가능하다.[5]

신용장이 종이로 된 문서로 개설되는 경우에는, 예컨대, "We hereby engage with drawers, endorser, and bona fide holders of drafts drawn under and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this credit shall be paid."와 같은 매입조항(negotiation clause)이 삽입된다.[6]

매입신용장은 그 매입대금의 지급시기에 따라 일람지급형 매입신용장(sight negotiation credit)과 기한부지급형 매입신용장(time negotiation credit)로 나뉜다. 이러한 구분은 당해 신용장상 (수익자에 대한) 개설은행의 지급시기에 기초한 것이며, 매입신용장에서 수익자가 지정매입은행을 이용하지 않고서 바로 개설은행에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7]를 상정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때 만약 당해 매입신용

---

2) UCP600 제6조 제b항 참조.

3) 지정은행에 관한 논의로, 허해관, "신용장거래상 지정은행의 법적 지위", 진산 김문환선생정년기념논문집 제1권 국제관계법의 새로운 지평(진산 김문환선생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법문사, 2011, p. 67) 참조. 이에 관한 우리 대법원판례로, "연지급신용장이 개설된 사안에서 당해 연지급신용장은 대금의 지급이나 선적서류 매입을 위한 지정은행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 그 문면상 자유 매입에 대한 명확한 수권도 없는 반면, 오히려 명확히 대금의 지급은 개설은행에서만 가능하다는 점과 그 선적서류의 제시 장소와 신용장의 유효기간의 기준장소도 개설은행이 소재하고 있는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신용장에 관하여 대금의 지급이나 선적서류 매입을 위한 개설은행에 의한 은행의 지정이나 수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68266 판결). 이는 비록 UCP500이 적용된 판결이긴 하나 UCP600하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4) 강원진, 무역결제론, 제3판, 박영사, 2015, p. 125.

5) 허해관, 전게논문, pp. 67~68.

6) John F. Dolan,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rev. ed. 2003 and 2005 Cumulative Supplement No. 1), Volume 1, A.S. Pratt & Sons, pp. 1~10 참조.

장에서 일람지급(sight payment)을 명시하였다면(일람지급형 매입신용장) 수익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일람지급을 받게 되고, 만약 연지급(deferred payment)이나 기한부환어음의 인수(acceptance of time draft)를 명시하였다면(기한부지급형 매입신용장) 각각 연지급확약이나 환어음 인수를 받은 후 만기에 지급을 받게 된다.[8] 이러한 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지급시기는 수익자가 지정매입은행을 이용하는 경우에 매입은행에 대한 개설은행의 상환시기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따라서 매입은행은 일람지급형 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즉시 상환을 받게 되고, 기한부지급형 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신용장에 명시된 만기에 상환을 받게 된다. 개설은행의 매입은행에 대한 이러한 상환시기는 수익자에 대한 매입은행의 매입대금 지급시기에 영향을 주며, 따라서 대체로 일람지급형 매입신용장의 경우에 매입은행은 수익자에게 즉시 매입대금을 지급하게 되고, 기한부지급형 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신용장에 명시된 만기와 연계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2. 매입은행

위와 같이 신용장에서는 그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9] 매입신용장의 경우에 그 이용장소로 기재되는 은행이 곧 매입은행이다. 따라서 매입은행은 매입신용장에서 수익자가 신용장서류를 제시하여 매입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신용장상 지정된 은행이라 정의할 수 있다.[10]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이 될 수 없다.[11] 위와 같은 매입은행의 정의를 문자 그대로 보자면 예컨대 SWIFT MT700 “Field 41a”에서 “Available With ...” 부분에 개설은행이 기재되는 경우에는 마치 개설은행도 매입은행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생각건대 매입신용장의 경우에도 개설은행은 항상 결제의무를 부담하며[12] 매입은행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개설은행이 특정한 은행을 매입은행으로 지정하는 것은 그 은행(지정매입은행)

---

7) 매입신용장에서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더라도 수익자는 이를 이용하지 않고서 바로 개설은행에 제시를 할 수 있다(UCP600 제6조 제a항 제2문, 제d항 제ii호). 이때 개설은행은 매입이 아니라 결제를 하여야 한다(UCP600 제7조 제a항 제v호 참조).

8) 동지, 전순환, 무역결제론, 한울, 2013, p. 208 참조.

9) UCP600 제6조 제a항, 제b항 각 참조.

10) 허해관, 전게논문, p. 77.

11) James E. Byrne, *UCP600: An Analytical Commenta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 2010, p. 156(이하 ‘Byrne, *UCP600: An Analytical Commentary*’로 인용).

12) UCP600 제7조 제a항(개설은행은 매입신용장의 경우에도 결제의무를 부담하며 매입의무를 부담하는 일이 없다).

에게 수익자의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수권하는 행위이자 그러한 수권에 따라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매입을 하고 그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한다면 그 은행에게 상환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이다.[13] 이러한 지정은 신용장상으로 이루어진다.[14] 무릇 신용장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하겠다는 개설은행의 확약"인바,[15] 이와 같이 개설은행은 신용장이라는 하나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위로써 (즉, 단일한 신용장개설행위로써), 일거에, 수익자에 대하여 결제약속을 함과 동시에 매입은행에 대하여 수권 및 상환약속을 한다.[16]

한편 위와 같이 SWIFT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Available With ..." 난에 특정한 은행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매입은행을 지정하며, 이때에는 예컨대 위의 "We engage here ..."와 같은 약속문구가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설은행이 그러한 "Available With ..." 난에 매입은행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그 은행에게 과연 매입의 수권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상환약속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인바, 이는 SWIFT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행의의 해석문제이다. 생각건대, 양자 모두 적극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모든 신용장에서 UCP가 적용되므로, 이 문제는 UCP600 제6조(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제7조(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확인은행의 의무), 제12조(지정), 제15조(일치하는 제시) 등을 포함한 관련규정에 의하여 해결되고, 그에 따라 수권과 상환약속의 존재를 긍정할 수 있다.

매입은행은 확인은행과 구별되어야 한다.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의 수권이나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에 자신의 확인을 추가한 은행"[17]을 말하며, 여기의 확인(confirmation)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 또는 매입하겠다는 ... 확약"[18]이다. 확인은행은 다른 지정매입은행이 있어서 그 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매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 결제할 의무가 있지만,[19] 다른 매입은행(지정은행)이 없이 오직 그 확인은행만이 매입은행으로 지정된 경우나 다른 매입은행 및 확인은행이 함께 매입은행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익자의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매입할 의무가 있다.[20] 이러한 후자의 경우에는 확인은행은 '소구불능조건으로 매입할 의무를

13) UCP600 제7조 제c항 제1문.
14) UCP600 제2조 신용장의 정의 참조.
15) 허해관, 전게논문, p. 66.
16) 그리고 확인은행은 신용장상 확인의 추가라는 단일한 행위로써, 일거에, 수익자에 대하여 결제약속을 함과 동시에 다른 지정은행에 대하여 수권 및 상환약속을 한다.
17) UCP600 제2조 확인은행의 정의 참조.
18) UCP600 제2조 확인의 정의 참조.
19) UCP600 제8조 제a항 제i호 제e목.
20) UCP600 제8조 제a항 제ii호 참조. 이때 확인은행은 무소구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지는 점에서 단순한 매입은행이 아니다.

3. 매 입

UCP600의 정의에 의하면, 매입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있는 경우)이 그 매입은행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은행영업일이나 그 전에 수익자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거나 그 지급에 동의함으로써 환어음(그 매입은행 이외의 은행 앞으로 발행된 어음) 및/또는 서류를 매수(purchase)하는 것을 말한다.[21] 나누어 살피자면 다음과 같다.

1) 매입의 주체

매입은 지정매입은행만이 할 수 있다.[22] 제한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신용장에 매입은행으로 명시된 단일 또는 복수의 은행이 지정매입은행에 해당하고, 자유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모든 은행이 지정매입은행의 지위를 갖는다. 지정매입은행이 아닌 은행(이러한 은행을 편의상 비지정매입은행 혹은 무권매입은행이라 한다)이 매입신용장하에서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예컨대 신용장서류와 함께 환어음을 할인하여 양수하는 것(실무상 이를 흔히 네고 혹은 'Nego'라 부른다)은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대법원도 "개설은행에 의한 수권이 있는 은행이 서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런 수권이 없는 은행의 경우에는 서류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매입'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밑줄은 필자가 추가함)이라고 보고 있다.[23] 비지정매입은행은 신용장법상 매입은행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다만 그와 같이 환어음을 양수한 비지정매입은행은 어음법상 환어음의 양수인의 지위를 갖는다.[24]

2) 매입의 객체

매입의 객체는 신용장서류, 즉 환어음 및/또는(and/or) 서류이다.[25] 여기에 "및/또

---

21) UCP600 제2조의 매입의 정의 참조.

22) UCP600 제2조의 매입의 정의 참조. 또한 James E. Byrne, "Negotiation in Letter of Credit Practices and Law: The Evolution of the Doctrine", *Texas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42:561, 2007, p. 575 참조. 물론 매입신용장 하에서 위와 같이 확인은행도 "Available With" 난에 단독으로 또는 다른 매입은행과 함께 기재되어 있거나 그 난에 "Any bank"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매입(negotiation)을 할 수 있다.

23)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68266 판결.

24) Byrne, *UCP600: An Analytical Commentary*, p. 157.

는"이라고 한 것은 매입신용장에서 필요서류의 하나로 환어음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며, 전자의 경우에 환어음[26]을 포함한 신용장서류가 매입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환어음이 없는 신용장서류가 매입의 객체가 된다. "및/또는"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용장서류(흔히 선적서류)[27] 없이 오직 환어음만을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매입은행으로서는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매입을 하도록 수권 받았고, 환어음만 필요서류로 요구하는 신용장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입을 하면서 신용장 원본의 제시나 교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매입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신용장서류를 매입할 때 신용장 원본을 제시받지 않았더라도 매입은 여전히 적법·유효하다.[28]

위와 같이 매입신용장하에서 환어음이 없이도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매입을 단순히 '환어음을 매입하는 것', 즉 환어음을 (할인하여) 유상으로 양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특히 이러한 오해로 인하여 매입은행의 지위가 환어음의 소지인의 지위에 불과한 것으로 오도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29] 당해 신용장서류의 하나로 환어음이 포함되어 있어 매입은행이 환어음을 양수하는 경우에 그는 단순히 어음법상의 환어음의 양수인의 지위를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신용장법상 매입은행의 지위를 갖는다.[30] 이로써 수익자로부터 일치하는 제시를 받아 매입을 한 매입은행은 환어음에 적용가능한 어음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신용장법상 개설은행에 대하여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등의 보호를 누릴 수 있다.

매입신용장에서 신용장서류의 하나로 포함되는 환어음은 일람출급환어음(sight draft)일 수도 있고 기한부환어음(usance draft, 혹은 time draft)[31]일 수도 있다. 전술

---

25)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93817 판결도 "매입은 단지 지정[매입]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 자체를 매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26) 이러한 경우에 이 환어음은 화환어음이라 불린다.

27) 선적서류라는 용어는 환어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28)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93817 판결 참조.

29) UCP500상의 논의로, 동지, 채동헌, "연지급신용장 대금의 만기전 지급과 매입의 법률관계 - 최근의 대법원 2001다68266 판결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12집, 국제거래법학회, 2004, pp. 236~237 참조. 이는 UCP600하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또한 허해관, 전게논문, p. 78 참조.

30)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대해 신용장에 기한 권리를 가지며, 그와 함께 환어음의 발행인과 배서인에 대해 어음상의 권리를 가지며, 이와 같이 신용장에 기한 법률관계와 환어음에 기한 법률관계가 병존한다(석광현, "신용장거래상의 은행의 법적지위 - 화환신용장거래의 법률관계", 남효순·김재형 공편, 금융거래법강의 II, 법문사, 2001, pp. 172~173); 김상만, "국제거래에서 수출환어음 매입의 법률관계 및 수출환어음 부도 시 매입은행의 권리에 대한 법적 연구", 서울법학 제19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p. 266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31) 기한부환어음은 어음제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환어음을 지칭하는 은행실무상 용어로 일람후정기출급, 확정일자후정기출급, 확정일출급 환어음이 그에 포

과 같이, 일람출급환어음이 발행되는 경우에 일람지급형 매입신용장이 되고, 기한부환어음이 발행되는 경우에 기한부지급형 매입신용장이 된다. 당해 신용장서류에 환어음도 없고 선하증권과 같은 권리증권도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매입은행으로서는 서류 자체만을 본다면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서류임에도 매입을 하는 것은 그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개설은행에 대하여 매입은행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3) 매입의 방법 - 매수

매입은 환어음 및/또는 서류를 "매수"(purchase)하는 것이다. 여기의 매수는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그 매입의 대가(매입대금)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요소를 중요하게 내포하는 용어이다. 신용장상 매입은 원래 수익자에게 조기(早期)에 자금을 공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매입은행은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신용장대금 자체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점에서 매입은행에 의한 지급(매입대금지급)은 신용장대금의 지급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일람지급은행에 의한 지급이나 연지급은행 또는 인수은행에 의한 연지급확약이나 환어음 인수 후의 만기지급과 다르다.[32]

더욱이 비록 UCP600은 매입을 환어음 및/또는 서류를 "매수"(purchase)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바로 위의 전술과 같은 맥락에서 신용장의 매입은 서류의 단순한 매수 내지 매매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수권된 행위를 하는 것, 즉,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매입을 하고 그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하면 그에 대하여 상환하겠다는 개설은행의 약속에 기하여 행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입은행은 특히 개설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히 '수익자로부터 환어음 및/또는 서류를 매수한 자'의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한편, 여기의 "purchase"(매수)라는 용어는 UCP500상의 "giving of value"(대가의 지급)를 대체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대가의 지급이 요구되므로 양자는 같은 맥락에 있으며, 이러한 정의는 UCP600상 매입은행이 단지 서류를 심사하고 송부하는 것만으로는 매입(negotiation)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33]과도 상통한다.[34]

UCP600 제2조 매입의 정의에서 매입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함될 수 있다.

32) 같은 맥락에서 연지급은행이나 인수은행은 자신의 연지급확이나 환어음의 인수에 따른 만기지급의무에 기하여 수익자에게 자금공여의 목적으로 '만기 전 지급'(prepay)을 하는바, 이는 신용장대금의 (조기)지급에 해당한다.

33) UCP600 제12조 제c항.

34) 허해관, 전게논문, p. 77.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불일치한 제시에 대하여도 그 불일치에 대한 개설은행의 권리포기가 있거나 개설은행이 불일치통지를 불이행하는 경우와 같이,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35]

4) 매입대금의 지급

매입대금은 매입당시에 현실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매입은행으로서는 매입대금을 추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방법으로 매입할 수 있다.[36] 이와 같이 매입은 매입대금을 매입당시에 지급하는 방법이나 장래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는바, 필자는 전자를 일람지급매입(sight negotiation), 후자를 장래지급매입(time negotiation)이라 부른다. 일람지급매입은 대개 당해 매입신용장상 지급이 일람시(at sight)에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장래지급매입은 그것이 장래의 어느 일자에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우리 대법에 의하면, 매입은 지정매입은행이 현금,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되, 다만 여기서 후자의 방법은 매입은행이 특정 일자에 수익자에게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현실적인 대가의 즉시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37]

그러나 매입은행은 매입은행에 대한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의 상환의무[38]의 이행기 이전에("on or before the banking day on which reimbursement is due to the nominated bank")[39] 매입대금을 지급하거나 그렇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여야 하며, 그러한 상환기일 후에는 UCP600에서 말하는 "매입"을 할 수 없다.[40] 여기서 그러

---

35) 동지, Byrne, *UCP600: An Analytical Commentary*, p. 36.

36) UCP600 제2조 매입의 정의에서도 이를 명시한다. 과거 UCP500(제10조 제b항 제ii호)에서는 "대가의 지급"(giving of value)로 규정하였기에, 장차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매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ICC 은행기술실무위원회(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는 1994. 9. 1., "Position Paper No. 2"를 발행하여 그러한 경우에 매입이 긍정됨을 명확히 하였다. 이 Position Paper는 ICC 홈페이지 <http://www.iccwbo.org/id553/index.html>(2011. 2. 방문)에서 입수할 수 있다.

37)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93817 판결 참조.

38) 물론 매입은행에 대한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의 상환의무는 매입은행이 수익자의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매입을 하고 그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한 경우에 비로소 발생한다(UCP600 제7조 제c항, 제8조 제c항).

39) UCP600 제2조 매입의 정의 참조.

40) 동지, UCP 600 Drafting Group, *Commentary* on UCP 600, ICC Publication No. 680, ICC, 2007, p. 22(이하 '*Drafting Group's Commentary on UCP600*로 인용한다); Byrne, *UCP600: An Analytical Commentary*, p. 159; Richard F. Dole, Jr., *op. cit.*, p. 774. 또한 허해관, 전게논문, pp. 77~78 참조.

한 상환기일 전에 현실로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의문이 없으나, 후자와 같이 '매입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지급채무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약속의 내용이 '그러한 상환기일 전에 매입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약속을 그러한 상환기일 전에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의 의문이 있을 수 있는바, 생각건대, 후자로 해석되어야 한다.[41]

Ⅲ. 매입은행과 수익자 사이의 관계

1. 제시장소 - 유효기간 준수여부의 기준장소

UCP600상 "일치하는 제시"가 되기 위해서는 '제시장소'와 '유효기간'[42]도 준수되어야 한다. 제시장소로서 수익자는 개설은행(확인신용장의 경우 확인은행 포함)과 지정매입은행 이외의 장소에서는 일치하는 제시를 할 수 없다.[43] 또한 신용장상 제시는 그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매입신용장에서 수익자가 지정매입은행을 이용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의 준수여부는 당해 제시가 그 유효기간 내에 그 지정매입은행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정된다.[44] 같은 맥락에서 우리 대법원은 UCP500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설사 서류를 수령한 지정[매입은행]이 그

41) 동지, *Byrne, UCP600: An Analytical Commentary*, p. 159.

42) UCP 제6조 제e항. 또한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24364 판결("신용장에 기재된 모든 필요서류는 반드시 서류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도 제시되어야 하므로, 서류제시기간과 유효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한 후에 제시된 경우에는 수리될 수 없고, 수익자가 일단 서류를 제시하였다가 개설은행의 통보에 따라 신용장 조건과의 불일치 사항을 보완하여 서류를 다시 제시하는 경우에도 서류제시기간과 유효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참조.

43) UCP600 제6조 제a항 및 제d항 제ii호. 물론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고서 처음부터 개설은행에 곧장 제시하는 것도 허용된다(*Ibid*).

44) UCP600 제6조 제d항 제i호. Richard F. Dole, Jr., "The Effect of UCP 600 upon U.C.C. Article 5 with respect to Negotiation Credits and the Immunity of Negotiating Banks from Letter-of-credit Fraud", 54 *Wayne L.* Rev. 735, 2008, p. 769. 우리 대법원의 견해도 이와 같은데, 대법원 2005.05.27. 선고 2002다3754 판결은 "서류제시를 위한 신용장의 유효기간과 운송관련 서류의 제시기간에 관한 신용장통일규칙의 위 각 규정은 일반적인 매입신용장의 경우 그 유효기간과 제시기간의 기준이 되는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제시장소에서 수익자가 매입은행에게 신용장과 그 관련 서류를 제시하는 기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서류의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 여부에 대한 기준시점은 수익자가 신용장이 정한 정당한 서류제시은행 혹은 지정은행에 서류를 제시한 시점이 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49302 판결도 같다. 이들은 UCP500하의 판결이긴 하나 UCP600하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서류를 매입하지 않고 그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함으로써 수익자를 위하여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할지라도 [서류제시]가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그 지정[매입은행]이 서류를 수령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밑줄은 필자가 첨가함)고 한다.[45]

지정매입은행이 제시장소인 것은 매우 중요한 결과를 낳는다. 실무에서 개설은행으로부터 매입은행으로 지정(수권)을 받지 않은 은행(이를 편의상 비지정매입은행 혹은 '무권매입은행(無權買入銀行)'이라 하기로 한다.(자신의 고객인 신용장 수익자의 편의를 위하여)(자신의 행위가 UCP600상 매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하고서) 이른바 "네고"(nego)(이를 편의상 '무권매입'이라 하기로 한다)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46] 그러나 수익자가 비지정매입은행에게 신용장서류를 네고의 목적으로 일응 제시하는 것은 UCP600상 제시(presentation)로 인정받지 못하고, UCP600상 비지정매입은행에 의한 무권매입은 매입(negotiation)으로 인정되지 않고 비지정매입은행은 매입은행의 지위를 갖지 못함을 유의하여야 한다.[47] 특히 비지정매입은행에 의한 무권매입은 UCP600상 "매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지정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개설은행과의 관계에서 수익자보다 나은 지위를 갖지 못한다.[48] 개설은행은 자신이 수익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비지정매입은행에 대항할 수 있다.[49] 같은 맥락에서, 비지정매입은행은 예컨대 수익자가 사기적 또는 권리남용적 청구를 한 경우에도 대체로 보호받지 못하되, 다만 이는 당해 신용장의 준거법에 의할 사항이다.[50]

---

45)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2다3754 판결도 "서류제시를 위한 신용장의 유효기간과 운송관련 서류의 제시기간에 관한 신용장통일규칙의 위 각 규정은 일반적인 매입신용장의 경우 그 유효기간과 제시기간의 기준이 되는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제시장소에서 수익자가 매입은행에게 신용장과 그 관련 서류를 제시하는 기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서류의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 여부에 대한 기준시점은 수익자가 신용장이 정한 정당한 서류제시은행 혹은 지정은행에 서류를 제시한 시점이 된다."고 하여 이를 긍정한다. 이 판례에 관한 평석으로, 김기선, "판례평석: 자유매입신용장하에서의 매입은행의 지위와 유효기일의 판단", 지역발전연구 제6권 제1호, 한국지역발전학회, 2006. 8. 참조.

46) 허해관, 전게논문, p. 84; 석광현, 전게논문, pp. 171~172에 의하면, 이는 지정매입은행은 외국은행의 지점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한국의 수출자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한다.

47) 석광현, 전게논문, p. 171; 허해관, 전게논문, p. 84.

48) Richard King, *Gutteridge & Megrah's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Eighth edition, Europa Publications Limited, 2001, pp. 106~107; 허해관, 전게논문, p. 85.

49) 석광현, 전게논문, p. 172.

50) 허해관, 전게논문, p. 85.

2. 서류심사의무

수익자로부터 서류제시를 수령한 매입은행은 단지 서류만을 기초로 그것이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인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51] 이때 매입은행은 오직 문면심사를 하여야 하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실체적 진실인지를 외부에 확인하는 실질심사는 금지된다.[52] 매입은행은 수익자에 대하여 서류제시일의 다음날부터 최장 5은행영업일 내에 서류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53] 만약 서류가 불일치하여 지급을 거절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류제시일의 다음날부터 최장 5은행영업일 내에 모든 불일치사유를 적시하여 수익자에게 매입거절통지(혹은 불일치통지)를 하여야 한다.[54] 다만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과 달리 매입은행은 그러한 거절통지기간을 위반하더라도 당해 제시가 불일치한 제시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처지에 놓이지는 않는다.[55] 매입은행으로부터 불일치통지를 수령한 수익자는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때에는 그 불일치사유를 모두 시정하여 재제시를 할 수 있다.[56]

3. 매입의무의 부존재

매입은행은 자신이 확인은행[57]이 아니거나 그밖에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개설은행에 의하여 매입은행으로 지정된 사실만으로는 수익자에 대하여 매입의무를 지지 않는다.[58] 즉 지정매입은행으로서는 그러한 지정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에

51) UCP600 제14조 제a항 참조.

52)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50299 판결은 “매입은행은 그 매입서류를 조사함에 있어서 실질적 조사의무가 면책되어 있는 것이지만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에 기재된 사항과 문면상으로 일치되는지 여부 혹은 관계서류가 상태성과 정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53) UCP600 제14조 제b항.

54) UCP600 제14조 제d항.

55) UCP600 제14조 제f항(그러한 실권적 효력은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56)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24364 판결 참조. “신용장에 기재된 모든 필요서류는 반드시 서류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도 제시되어야 하므로, 서류제시기간과 유효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한 후에 제시된 경우에는 수리될 수 없고, 수익자가 일단 서류를 제시하였다가 개설은행의 통보에 따라 신용장 조건과의 불일치 사항을 보완하여 서류를 다시 제시하는 경우에도 서류제시기간과 유효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밑줄은 필자가 첨가함).” 이는 UCP500하의 판결이나 UCP600하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57) 당해 신용장이 확인은행에서 매입의 방법으로 이용가능하도록 개설된 경우에, 확인은행은 상환청구권(recourse) 없이 매입하여야 한다(UCP600 제8조 제a항 제ii호).

58) UCP600 제12조 제a항.

응하여 그에 상정된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설령 자신에게 서류가 제시되었더라도 그 접수를 거절하거나, 접수는 하되 심사를 하지 않고 서류를 개설은행(혹은 확인은행)에 송부하거나, 접수 및 심사를 하되 그에 따른 매입을 하지 않고 서류를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에 송부할 수 있다.[59]

같은 맥락에서 매입은행은 서류를 접수한 사실만으로 또는 서류를 (접수 및) 심사하고 송부한 사실만으로 (특히 수익자에 대하여) 매입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60] 따라서 수익자로서는 일치하는 제시를 하여 매입은행이 접수를 한 후에 서류심사를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매입을 거절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61]

그러한 경우에 수익자는 (다른 매입은행이 더 있다면 그 은행을 이용할 수 있되) 결국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있는 경우)에 제시 및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그 동안에 신용장 유효기간이 소진되더라도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은 수익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62] 애초 지정매입은행에 일치하는 제시를 한 당시에 유효기간이 준수되었기 때문이다.[63] 그러나 수익자로서는 매입은행이 위와 같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한 접수나 심사, 매입을 거절하는 경우에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으로부터 결국 지급을 받더라도 (특히 일람지급형 매입신용장의 경우에) 이는 지급을 늦게 받는 결과가 되는바 그러한 지연기간 동안의 이자를 개설은행에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생각건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64] 신용장거래관행상 관련당사자들(개설은행, 매입은행, 수익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이해하고서 거래에 참여하기 때문이다.[65]

더욱이 매입은행으로서는 확인은행과 달리 서류를 접수하였거나 나아가 서류를

---

59)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2다3754 판결은 "신용장 관련 서류를 제시받은 은행으로서는 자신이 직접 이를 매입하여 매입은행으로서 개설은행에 대하여 상환을 구할 수도 있고, 그 서류를 매입하지 않은 채 직접 그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하여 서류제시은행으로서 수익자를 위하여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도 같다. 이들은 UCP500하의 판결이나 UCP600하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60) UCP600 제12조 제c항 제1문.

61) 허해관, 전게논문, p. 87.

62) Richard F. Dole, Jr., *op. cit,* p. 771. 이와 관련하여, Peter Ellinger & Dora Neo, *The Law and Practice of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Hart Publishing, 2010, pp. 184~185는 지정은행이 수익자의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에, 개설은행은 지정은행의 과책이 그에게 귀속되므로 수익자에 대하여 불일치한 제시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63) 다만 이때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으로서는 그 밖의 모든 요건의 충족여부를 가려서 일치하는 제시여부를 결정함은 물론이다.

64) 허해관, 전게논문, p. 86.

65) 상게논문, p. 86.

심사하고 송부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 매입을 한 것으로 취급되지도 않는다.[66] 매입은행은 매입을 함으로써 비로소 매입을 한 것으로 되고, 그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매입대금지급의무 포함)를 부담하게 되고,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에 대하여 상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67]

4. 수익자에 대한 소구

매입은행은 수익자에게 매입대금을 지급을 한 후에 개설은행이 여하한 이유로(불일치한 제시를 이유로, 혹은 일치하는 제시임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거절하는 경우에, 수익자에게 그 매입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68] 이를 소구(遡求, recourse)라 한다.[69] 원래 소구의 관념은 어음법에서 유래하였으나, 여기서 다루는 소구는 신용장법의 문제이고, 매입은행과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문제이다.[70]

수익자와 매입은행 사이에서 매입행위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매입은행에 의한 매입은 종국적이지 아니하여 매입은행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수익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가지므로 개설은행이 불일치한 제시를 이유로 상환을 거절하는 경우에 수익자에게 소구할 수 있다.[71] 나아가 같은 맥락에서 매입은행은 상환에 관하여 개설은행위험이나 개설은행의 국가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며, 예컨대 만약 개설은행

66) UCP600 제12조 제c항.

67) 허해관, 전게논문, p. 87.

68) 대법원 2003. 10. 09. 선고 2002다2249 판결 참조. 그에 의하면, "신용장에 의한 화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이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개설은행이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위 매입은행은 수익자와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자를 상대로 그 신용장 매입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밑줄은 필자가 추가함)."

69) 이를 "상환청구"라고도 하나, 신용장거래에서 지급이나 매입을 한 지정은행이 개설은행에 청구하는 "reimbursement"도 상환이라고 번역하므로 본고에서는 양자의 구별을 위하여 이를 소구라 칭하기로 한다.

70) 허해관, 전게논문, p. 90.

71) 석광현, 전게논문, p. 170("... 계약상의 근거가 있으면(예컨대, 외국환거래약정서) 그에 기하여 수익자에게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요구한다.")도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Richard F. Dole, Jr., o*p. cit.*, p. 781은 매입은행은 매입의무가 없으므로 소구권을 갖는다고 한다. 우리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2다2249 판결("신용장에 의한 화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이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개설은행이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위 매입은행은 수익자와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자를 상대로 그 신용장 매입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도 매입은행과 수익자와 사이의 약정에 기초하여 매입은행의 소구권을 긍정한다. 다만 "상환"(reimbursement)이라는 정확한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이 이 판결에서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청구한다고 표현한 것은 유감이다.

이 도산하거나 개설은행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수익자에게 소구할 수 있다.[72]

다만 실무상,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소구가능성에 관하여 많은 은행(매입은행)들은 자신이 서류심사를 잘못하여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소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73] 이에 관하여 그 하자를 치유(cure)할 수 있었던 경우와 그렇지 못하였던 경우를 구분하는 견해가 유력한데, 그에 의하면, (비록 매입은행의 잘못으로 서류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익자가 치유할 수 없었던 하자이었거나 치유할 수 있었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치유하여 재제시(re-presentation)를 할 수 없었던 하자의 경우에까지 굳이 자발적으로 소구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74]

Ⅳ. 매입은행과 개설은행 사이의 관계

1. 지정의 취소불능성

전술하였듯이, 개설은행이 특정한 은행을 매입은행으로 지정하는 행위는 그 지정매입은행에 대한 개설은행의 수권행위이자 상환약속행위인바, 개설은행이 이러한 지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결국 신용장의 취소불능성의 문제이자 신용장 조건변경(amendment)의 문제로 귀결된다.[75]

무릇 신용장은 취소불능성을 그 본질로 하므로[76]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동의가 없이는 신용장을 취소할 수 없고 그 조건변경도 할 수 없다.[77] 개설은행이 일부 매입은행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신용장의 이용장소를 변경하는 것이고, 매입은행 전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신용장의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는 신용장의 조건변경에 해당하게 되고, 따라서 수익자와의 관계에서 개설

---

72) Byrne, *UCP600: An Analytical Commentary*, p. 512; 허해관, 전게논문, p. 91.
73) *Ibid*, p. 512; 상게논문, pp. 91~92.
74) *Ibid*, p. 512; 상게논문, p. 92.
75) 허해관, 전게논문, p. 80.
76) UCP600 제2조 신용장의 정의, 제3조 신용장의 해석 참조. 신용장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하겠다는 개설은행의 확약"인바, UCP600상 그러한 약속 중에서 취소불능(irrevocable)한 것만이 신용장이고 취소가능한 것은 신용장이 아니다.
77) UCP600 제10조 제a항.

은행은 수익자의 동의가 없이는 매입은행의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78]

개설은행과 매입은행 사이의 문제로서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UCP600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생각건대, (수익자에 대한 개설은행의 결제약속으로서의) 신용장의 취소불능성과 같은 취지에서 (매입은행에 대한 개설은행의 수권 및 상환약속으로서의) 매입은행의 지정도 취소불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79] 왜냐하면,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의 지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에, 이것이 수익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개설은행과 매입은행 사이에서 그것이 유효하다고 한다면 수익자가 매입은행에 일치하는 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은행으로서는 그에 대하여 매입을 하는 것이 무권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개설은행에 상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두려워하여 매입을 거절할 것이고, 따라서 결국 수익자로서는 개설은행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게 되므로 마치 그 지정의 취소가 수익자에게도 유효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80]

2. 개설은행에 대한 상환청구권

매입을 행한 지정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갖는다.[81] 이는

78) 허해관, 전게논문, pp. 80~81; 또한 강원진・이천수, "발행은행에 대한 지정은행의 대금상환청구상의 저해요인", 무역학회지 제21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1996, p. 133도 이를 긍정한다.

79) 지정은행에 관한 논의로, 허해관, 전게논문, p. 81 참조.

80) 상게논문, p. 81 참조; 동지, 양영환·오원석·박광서, 무역상무 제2판, 삼영사, 2011, p. 292.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88337 판결에서 우리 대법원은 "취소불능신용장에서 규정된 수익자의 권리 또는 권리의 행사요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장 조건 등의 변경은 수익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취소불능신용장의 이러한 조건변경 제한규정은 개설은행이 매입은행 등 지정은행에 대한 지시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시 내용이 실질적으로 수익자의 권리 또는 권리의 행사요건 등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익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와 같은 지시는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개설은행의 그와 같은 지시가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매입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한다면,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수익자는 매입은행에게 변경지시 전의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반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동의 없이 매입은행에 대한 지시를 통하여 취소불능 신용장의 신용장 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개설은행은 수익자뿐만 아니라 매입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지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바, 이러한 판결의 취지는 위 본문과 같은 개설은행의 의한 매입은행의 지정의 일방적 취소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81) UCP600 제7조 제c항.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도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에서 신용장의 제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게 표시된 서류와 상환으로 환어음을 매입한 매입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장 개설은행은 상환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수익자로부터 승계하는 권리가 아니라 매입은행이 스스로 취득하는 권리이다('창설적 취득').[82] UCP600은 개설은행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매입하고 그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한 매입은행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개설은행의 [매입]은행에 대한 상환의무는 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의무로부터 독립적"이라고 규정하여 이를 명시한다.[83]

매입은행의 상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i) 일치하는 제시가 있었어야 하고, (ii) 그에 대하여 매입은행이 매입을 하였어야 하며, 또한 (iii) 신용장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하였어야 한다.[84]

첫째, 매입은행은 일치하는 제시가 아니었음에도 매입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상환청구권을 갖지 못한다.[85] 이는 매입을 한 이유가 불일치한 제시에 대한 심사를 잘못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불일치한 제시라는 사실을 알고서 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는다.[86] 그러나 개설은행이 그러한 불일치한 제시에 대하여 불일치통지(혹은 서류거절통지)를 불이행함으로써 그 불일치를 주장할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불일치에 대하여 권리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매입은행이 상환청구권을 가짐은 물론이다.

둘째, 매입을 행한 매입은행만이 상환청구권을 갖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매입은행은 매입대금을 현실로 지급하거나 향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매입을 행할 수 있는데,[87] 후자와 같이 아직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입은행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생각건대, 매입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매입은행도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매입은행에 대한 개설은행의 상환시기는 당해 신용장에 따라 결정되고, 매입은행과 수익자 사이에서 매입대금 지급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는 매입은행과 수익자가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

82) 동지, 석광현, 전게논문, p. 171; 흥미로운 견해로 Byrne, *UCP600: An Analytical Commentary*, pp. 160~161에서는, 신용장실무에서 지정매입은행에 의한 매입이 있는 때에는 "the right to be paid the proceeds under the LC"(신용장대금을 지급 받을 권리, 혹은 신용장대금지급청구권)가 매입은행에게 이전하여 매입은행은 자신의 이름으로 신용장대금을 수령할 별도의 권리를 갖는다고 한다.

83) UCP600 제7조 제c항 제1문 및 제3문.

84) UCP600 제7조 제c항 제1문.

85)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사이의 상환청구에 관한 사안에서, 우리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4158 판결은 "제시된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여 개설은행으로서는 마땅히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전부 거절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대금을 지급해 버린 경우, 그 위험은 개설은행이 부담하여야 하고 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대지급한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이는 매입은행과 개설은행 사이에서 매입은행의 상환청구권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86) 허해관, 전게논문, pp. 88~89.

87) UCP600 제2조 매입의 정의 참조.

셋째, 개설은행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발생을 위하여 매입은행은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88] 여기의 송부(forward)는 서류를 개설은행에 전달하는 물리적 행위를 일컫는다.[89]

그러나 매입은행이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신용장 및 관련 서류를 매입하여 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서류제시 및 상환청구를 하였다면 개설은행의 입장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매입은행의 상환청구가 신용장 및 관련 서류의 매입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 지연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환을 거절할 수 없다.[90]

한편, 개설은행의 상환시기, 즉,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언제 상환하여야 하는지는 일람지급형 매입신용장(즉, 개설은행이 일람지급을 하는 것으로 확약하는 신용장이면서 지정매입은행에 의한 매입을 허용하는 신용장)인지, 기한부지급형 매입신용장(즉, 개설은행이 연지급확약이나 환어음의 인수 후 만기지급을 하는 것으로 확약하는 신용장이면서 지정매입은행에 의한 매입을 허용하는 신용장)인지에 따라 다르다.[91] 기한부지급형 매입신용장의 경우에, 매입은행에 대한 개설은행의 상환시기는 당해 신용장상으로 상정된 만기(at maturity)이다.[92] 이는 설령 매입은행이 그러한 만기 전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93]

일람지급형 매입신용장의 경우에 매입은행에 대한 개설은행의 상환시기는 생각건대 일람지급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시기에 준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람지급형 매입신용장 개설은행의 매입은행에 대한 상환시기는 원칙적으로 (i)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개설은행이 서류심사결과 실제로 일치하는 제시라고 결정하는 때이다.[94] 그러나 (ii) 불일치한 제시에 대하여 개설은행이 그 불일치에 대하여 권리포기를 하고 서류를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그 상환시기는 그러한 결정을 한 때라고 하여야 하고,[95] 끝으로 (iii)

---

88) 매입은행은 당해 제시가 일치하는 제시인 것으로 결정하고 매입을 하는 때에는, 서류를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있는 경우)에 송부하여야 한다(UCP600 제15조 제c항).

89) Byrne, *UCP600: An Analytical Commentary*, p. 368.

90)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 참조.

91) 허해관, 전게논문, p. 89.

92) UCP600 제7조 제c항 제2문은 연지급신용장과 인수신용장 개설은행의 지정은행(각각 연지급은행과 인수은행)에 대한 상환시기를 규정하는데, 이는 기한부지급형 매입신용장에서 매입은행에 대한 개설은행의 상환시기를 결정하는 데 준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93) *Ibid.*

94) UCP600 제15조 제a항에서는 "개설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결정하는 때, 결제하여야 한다(When an issuing bank determines that a presentation is complying, it must honour)."고 규정하는바, 일람지급신용장의 경우에 개설은행으로서는 당해 제시가 일치하는 제시라고 결정하는 때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불일치한 제시에 대하여 개설은행이 불일치통지(혹은 지급거절통지)를 불이행함으로써 그 불일치를 주장할 권리를 상실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제시일(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서류를 제시한 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5은행영업일이 종료하는 때[96]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결정되는 상환시기는 개설은행의 상환지연에 대한 이자의 기산시기로 작용한다.

3. 제시인

매입을 행한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대하여 제시인(presenter)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매입은행으로부터 서류제시를 수령한 개설은행은 단지 서류만을 기초로 그것이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인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97] 물론 이때 개설은행은 오직 문면심사를 하여야 하고, 실질심사는 금지된다. 개설은행은 서류제시일의 다음날부터 최장 5은행영업일 내에 서류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98] 만약 서류가 불일치하여 지급을 거절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류제시일의 다음날부터 최장 5은행영업일 내에 모든 불일치사유를 적시하여 매입은행에 거절통지를 하여야 하고,[99] 만약 이러한 기간을 위반하는 때에는 당해 제시가 불일치한 제시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된다.[100]

4. 신용장사기에 대한 보호

수익자가 서류를 위·변조하여 제시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신용장사기가 있고 그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권리남용 금지의 법리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설은행은 수익자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101] 개설의뢰인과의 관계에

---

95) UCP600 제15조 제a항 유추적용.
96) UCP600 제16조 제d항 및 제f항 참조.
97) UCP600 제14조 제a항.
98) UCP600 제14조 제b항.
99) UCP600 제14조 제d항.
100) UCP600 제14조 제f항.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52911 판결도 같은데, "매입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및 그 관련서류를 제시받은 개설은행이 신용장 및 그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개설은행은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 신용장통일규칙이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매입은행에게 그 모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최초에 명시하지 아니한 새로운 하자를 주장하여 신용장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는 UCP500하의 판결이나 UCP600하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또한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3883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83715,83722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도 같다.

서는 수익자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당해 신용장이 일람지급신용장이어서 신용장대금이 수익자에게 이미 지급된 상태에서 추후에 신용장사기가 확정되는 경우에 선의(즉 신용장사기의 사실을 모르고서)의 개설은행은 선택적으로 수익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102]

매입신용장의 경우에 매입은행이 수익자의 신용장사기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선의로 매입을 행한 경우에, 이러한 선의의 매입은행은 당해 신용장의 준거법에 따라 선의의 자로서 보호된다. 우리 대법원도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에서 서류 등의 매입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매입은행이 매입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았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신용장 개설은행은 상환의무를 면할 수 없다."(밑줄은 필자가 추가함)고 판시하여 이를 긍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103] 따라서 수익자의 신용장사기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매입은행은 원칙적으로 개설은행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갖는다. 다만 기한부지급형 매입신용장에서,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아직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단지 장래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지급채무부담)하고 있는 상태라면, 생각건대,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대하여 신용장사기를 이유로 상환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104]

---

101) 따라서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93817 판결과 같이, "선적서류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 작성을 포함한다)되었을 경우 은행이 위조에 가담한 당사자이거나 또는 서류의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신용장거래를 빙자한 사기거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은행은 더 이상 이른바 신용장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밑줄은 필자가 추가함)."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도 또한 같다.

102) 허해관, 전게논문, p. 92.

103)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88337 판결. 또한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68266 판결("신용장의 적법한 매입이 있은 후에 그와 같은 신용장 거래가 선적서류의 위조 등으로 인한 사기 거래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은행은 그 신용장대금의 지급이나 매입 당시 그 은행 자신이 위조 등 사기행위의 당사자로서 관련이 되어 있거나 매입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문서라는 등의 사기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도 같다.

104) 한편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68266 판결에 의하면, "만일 은행에 의한 신용장의 매입이 적법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용장통일규칙상의 '매입'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개설은행으로서는 그 신용장의 만기에 서류를 제시하는 위 은행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신용장 거래에 있어 수익자의 사기 행위가 밝혀진 경우 개설은행은 이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밑줄은 필자가 첨가함)고 하는바, 신용장의 부적법한 매입의 경우에 매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른바 신용장사기의 경우에도 부적법한 매입을 지급거절사유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

한편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이 수익자의 신용장사기를 이유로 상환을 거절하는 경우에 수익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고,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지정은행으로서는 개설은행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수익자에게 소구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105] 이러한 매입은행의 소구권은 개설은행의 상환거절이 정당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수익자에 대하여 매입은행은 매입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입은행이 소구하는 경우에, 만약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이 부당하다면 수익자는 개설은행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물론 수익자는 이러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매도인의 지위에서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등의 매매계약상 구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V. 결 언

위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신용장 매입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있는 경우)이 그 매입은행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은행영업일 이전에 수익자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거나 그 지급에 동의함으로써 환어음(그 매입은행 이외의 은행 앞으로 발행된 어음) 및/또는 서류를 매수하는 것이다. 매입신용장은 수익자로 하여금 개설은행 이외의 은행에서 매입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신용장이며, 매입신용장은 그 매입대금의 지급시기에 따라 일람지급형 매입신용장과 기한부지급형 매입신용장으로 구분된다. 매입은행은 매입신용장에서 수익자가 신용장서류를 제시하여 매입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신용장상 지정된 은행이다. 매입은행은 수익자의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개설은행으로부터 수권을 받고 있고, 나아가 그러한 수권에 따라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매입을 하고 그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한다면 상환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있다.

지정매입은행이 있는 경우에 수익자의 제시가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그 지정매입은행에 제시된 일자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수익자가 비지정매입은행에게 신용장서류를 네고의 목적으로 일응 제시하는 것은 유효한 제시가 아니다. 그러나 확인은행이 아닌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의하여 매입은행으로 지정된 사실이나 수익자로부터 서류를 접수한 사실 또는 그 서류를 심사하고 개설은행에 송부한 사실만으로는 수익자에 대하여 매입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러

105) Byrne, *UCP600: An Analytical Commentary*, pp. 512~513. 또한 허해관, 전게논문, p. 92 참조.

한 경우에 지정매입은행에 일치하는 제시를 한 수익자는 결국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있는 경우)에 제시 및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그 동안에 신용장 유효기간이 소진되더라도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은 수익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매입은행은 수익자에게 매입대금을 지급을 한 후에 개설은행이 여하한 이유로 상환을 거절하는 경우에, 수익자에게 그 매입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소구, 또는 상환청구).

한편, 수익자와의 관계에서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동의가 없이는 매입은행의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 나아가 개설은행과 매입은행 사이의 문제로서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의 지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수익자의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매입을 이행한 지정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가지며, 이는 수익자로부터 승계하는 권리가 아니라 매입은행이 스스로 취득하는 권리이다. 개설은행의 상환시기로서, 기한부지급형 매입신용장의 경우에, 개설은행은 당해 신용장에서 상정된 만기에 상환할 의무가 있고, 일람지급형 매입신용장의 경우에 매입은행에 대한 개설은행의 상환시기는 일람지급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시기에 준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매입을 행한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대하여 제시인(presenter)의 지위를 갖는다.

특히 수익자에 의한 명백한 신용장사기가 있는 경우에, 권리남용 금지의 법리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설은행은 수익자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입신용장의 경우에 매입은행이 수익자의 신용장사기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선의로 매입을 행한 경우에, 이러한 선의의 매입은행은 당해 신용장의 준거법에 따라 선의의 자로서 보호되고, 따라서 개설은행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갖는다. 다만 기한부지급형 매입신용장에서,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아직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대하여 신용장사기를 이유로 상환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의의 매입은행으로서는 개설은행이 수익자의 신용장사기를 이유로 상환을 거절하는 경우에 수익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고, 따라서 이때 개설은행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수익자에게 소구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신용장의 매입 및 매입신용장, 매입은행의 개념과 수익자와 매입은행 사이 및 매입은행과 개설은행 사이의 다양한 법적 관계를 각각 고찰하였다. 종래 신용장의 매입에 관한 개념과 당사자의 법률관계는 결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신용장 분야로서 그간 더러 오해가 있어 왔고 그에 따라 실무의 처리도 다소 혼선이 있어 왔다. 부족하나마 본고가 그러한 오해와 혼선의 해소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강원진, 무역결제론, 제3판, 박영사, 2015.

강원진·이천수, “발행은행에 대한 지정은행의 대금상환청구상의 저해요인”, 무역학회지 제21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1996.

김기선, “판례평석: 자유매입신용장하에서의 매입은행의 지위와 유효기일의 판단”, 지역발전연구 제6권 제1호(통권 제10호), 한국지역발전학회, 2006. 8.

김상만, “국제거래에서 수출환어음 매입의 법률관계 및 수출환어음 부도 시 매입은행의 권리에 대한 법적 연구”, 서울법학 제19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석광현, “신용장거래상의 은행의 법적 지위”, 금융거래법강의 II(남효순・김재형 공편), 법문사, 2001.

양영환·오원석·박광서, 무역상무, 제2판, 삼영사, 2011.

이정원, “신용장거래에서 개설은행과 매입은행의 주의의무와 준거법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2권 1호, 한국중재학회, 2012.

전순환, 무역결제론, 한올, 2013.

채동헌, “연지급신용장 대금의 만기전 지급과 매입의 법률관계 - 최근의 대법원 2001다68266 판결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12집, 국제거래법학회, 2004.

허해관, “신용장거래상 지정은행의 법적 지위”, 진산 김문환선생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진산 김문환선생정년기념논문집 제1권 국제관계법의 새로운 지평, 법문사, 2011.

James E. Byrne, “Negotiation in Letter of Credit Practices and Law: The Evolution of the Doctrine, *Texas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42:561, 2007.

_____, *UCP600: An Analytical Commenta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 2010.

John F. Dolan, “Negotiation Letters of Credit”, 119 *Banking L.J.* 409, 2002.

_____,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rev. ed. 2003 and 2005 Cumulative Supplement No. 1), Volume 1, A.S. Pratt & Sons.

Peter Ellinger & Dora Neo, *The Law and Practice of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Hart Publishing, 2010.

Richard F. Dole, Jr., “The Effect of UCP 600 upon U.C.C. Article 5 with respect to Negotiation Credits and the Immunity of Negotiating Banks from Letter-of-credit Fraud”, 54 *Wayne L. Rev.* 735, 2008.

Richard King, *Gutteridge & Megrah's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Eighth edition, Europa Publications Limited, 2001.

UCP 600 Drafting Group, *Commentary on UCP 600* (ICC Publication No. 680), ICC, 2007.

대법원 2002. 05. 28. 선고 2000다50299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49302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3883 판결

대법원 2004. 0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대법원 2005. 05. 27. 선고 2002다3754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4158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24364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52911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88337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93817 판결

ABSTRACT

Legal Status of Negotiating Banks of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Hai-Kwan HEO

This article provides the definitions of the negotiation of credit, the negotiating bank and the negotiation credit. It further describes a number of legal status of negotiating banks by looking into the legal relations firstly between the beneficiary and the negotiating bank and secondly between the issuing bank and the negotiating bank. This study is in large part based on relevant provisions of UCP 600 and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Under UCP 600 the definition of negotiation requires the purchase by the nominated negotiating bank of the required documents by advancing funds on or before the banking day on which reimbursement is due to the negotiating bank. A negotiation credit authorizes the negotiating bank who is a nominated bank to purchase from the beneficiary the documents required by the letter of credit and to present those documents to the issuing bank for reimbursement. If the credit is to be honoured at sight, reimbursement is due when the issuing bank determines that there has been a conforming presentation. Reimbursement under a letter of credit available by acceptance or by deferred payment is due at maturity of the credit.

In particular, while the timing of advance by the nominated negotiating bank is up to the parties, a promise of the negotiating bank to advance the purchase price to a fraudulent beneficiary does not confer immunity from letter-of-credit fraud prior to its performance. This requires the negotiating bank who is notified of material fraud prior to making an advance to beneficiary to avoid a loss by using the fraud.

Keywords : Negotiation, Negotiating Bank, Negotiation Credit, Duty to Negotiate, Right to Recourse